■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임대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단지 개요	단지 명칭	
	단지 위치	
	사업주체명	
	사업계획승인일자	사용검사(사용승인)일
건축물 개요	세대수	난방방식
	층수	승강기 설치 유 [], 무 []
관리시작 예정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체관리 인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신청인

자치관리인가서(인가번호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관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